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 국토교통부 | <h1>보도 설명자료</h1> | |  |
| | 배포일시 | 2020. 3. 5.(목) 총 2매(본문 2) | |
|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| 담 당 자 | · 과장 황윤언, 사무관 김진호, 주무관 이전욱 · ☎(044) 201-3351, 3343 | |
| 보도 일시 | |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 | |

2020년 3.16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,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%로 확대(종전 40%)되어,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당첨기회가 확대됩니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*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 시장을 감안하여,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%까지 확대(종전 40%)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(최소화)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* 본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,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, 사업주체가 공개방법(통상 인터넷접수)으로 무순위 청약 실시

-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%까지 선정('19.5월~)하고 있으나,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,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 300% 까지 대폭 확대한다.

<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개선(안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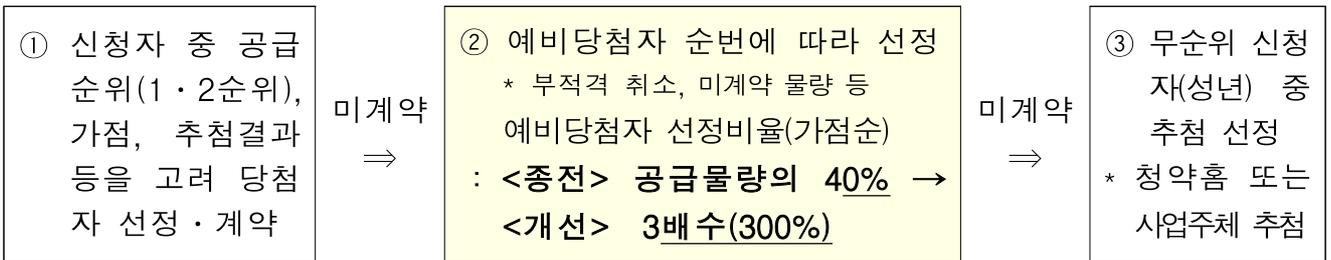
| 기 존 | 개 선 안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① 투기과열지구: 500% ② 그 외 지역: 40% | ① 투기과열지구 : 500% ② 청약과열지역* : 300% ③ 수도권(인천, 경기) : 300% ④ 지방 광역시 : 300% (부산, 대구, 대전, 광주, 울산) ⑤ 그 외 지역 : 40% | • 금번에 확대된 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강화된 500% 비율 적용 |

* 「주택법」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이 과열되었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으로, '20.3월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동일

□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,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, 당첨되지 못한 1·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,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서울의 경우, 예비당첨자 확대('19.5) 이후 무순위 청약물량은 전체 공급량 대비 1.2% 수준으로 대폭 감소

< 분양주택 예비당첨자 선정절차 : 수도권, 광역시 >



□ 금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(청약홈) 개선하여, '20.3.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

| | | |
|---|---|---|
|  |  |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김진호 사무관(☎ 044-201-33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|
|---|---|---|